

# 군 보

제622호

2026. 4. 15.

선 람	기관의 장

## 조 례

- 순창군 조례 제3048호 순창군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19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 1
- 순창군 조례 제3049호 순창군 청렴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 ----- 4
- 순창군 조례 제3050호 순창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 ----- 6
- 순창군 조례 제3051호 순창군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 10
- 순창군 조례 제3052호 순창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 ----- 16
- 순창군 조례 제3053호 순창군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 ----- 18
- 순창군 조례 제3054호 순창군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 ----- 20
- 순창군 조례 제3055호 순창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 일부개정 조례 ----- 22
- 순창군 조례 제3056호 순창군 순창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 ----- 30
- 순창군 조례 제3057호 순창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 ----- 32
- 순창군 조례 제3058호 순창군 금연지도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 ----- 39
- 순창군 조례 제3059호 순창군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 -- 41
- 순창군 조례 제3060호 순창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 ----- 51

## 고 시

- 순창군 고시 제2026-86호 대가마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기본계획 고시 ----- 54
- 순창군 고시 제2026-87호 매우마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기본계획 고시 ----- 55
- 순창군 고시 제2026-94호 2026년 강천산군립공원계획 결정(변경) 고시 ----- 56

## 공 고

- 순창군 공고 제2026-353호 순창군 민원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61
- 순창군 공고 제2026-377호 순창군 권일송 문학상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 65
- 순창군 공고 제2026-381호 순창군 사무전결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71
- 순창군 공고 제2026-383호 군계획시설사업 공사완료 공고 ----- 74
- 순창군 공고 제2026-385호 순창군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75
- 순창군 공고 제2026-391호 순창군 기업연계 청년근로자 기숙사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80
- 순창군 공고 제2026-392호 순창군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87
- 순창군 공고 제2026-401호 온천원 보호지구 해제를 위한 의견청취 공고 ----- 91

회 람							
--------	--	--	--	--	--	--	--

제30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 이송된 순창군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19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를 공포한다.

2026년 4월 15일

순 창 군 수

순창군 조례 제3048호

## 순창군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19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순창군에서 사용하는 전라북도 명칭을 전북특별자치도로 개정하고 순창군의 자치법규를 현행화하여 우리군의 자치법규를 현실에 맞게 정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전북특별자치도 설치에 따른 명칭 정비) 전북특별자치도 설치에 따라 순창군 각 부서 소관 자치법규의 명칭을 정비하며, 내역은 별표와 같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 자치법규 일제 정비 대상(제2조 관련)

연번	담당부서(팀)	자치법규명	조항호	현행	개정
1	행정과 (대외협력팀)	순창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14조의2제3항	전라북도	전북특별자치도
2	행정과 (정보통신팀)	순창군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제5조제2항	도지사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3	행정과 (정보통신팀)	순창군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 구축 및 운영 조례	제12조제4항	전라북도 교육감	전북특별자치도 교육감
4	재무과 (재산관리팀)	순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8조	도지사	전북특별자치도지사
5	민원과 (건축팀)	순창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6조제3항	「전라북도 공공디자인 진흥조례」 전라북도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전북특별자치도 공공디자인 진흥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6	민원과 (건축팀)	순창군 건축물관리 조례	제8조제3항	전라북도지사	전북특별자치도지사
7	민원과 (건축팀)	순창군 경관 조례	제10조제1항	전라북도지사	전북특별자치도지사
8	민원과 (건축팀)	순창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2조제6호	전라북도	전북특별자치도
9	민원과 (건축팀)	순창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조 제9조제3호	「전라북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도지사	「전북특별자치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북특별자치도지사
10	경제교통과 (지역경제팀)	순창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조례	제3조제2항	도지사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11	안전재난과 (사회재난팀)	순창군 재난기본소득 지원 조례	제7조	전라북도	전북특별자치도
12	건설과 (도시계획팀)	순창군 계획 조례	제3조	도지사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연번	담당부서(팀)	자치법규명	조항호	현행	개정
13	환경위생과 (위생팀)	순창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2조제3호	「전라북도 향토음식발굴육성조례」 제6조제1항	「전북특별자치도 향토음식발굴 육성 및 지원 조례」 제2조제1호
14	보건사업과 (지역보건팀)	순창군 노인 실명예방을 위한 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전라북도	전북특별자치도
15	보건사업과 (지역보건팀)	순창군 노인·장애인 의치보철 및 노인 임플란트 지원사업 조례	제5조	전라북도	전북특별자치도
16	농업축산과 (농정팀)	순창군 농업·농촌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7호	도지사	전북특별자치도지사
17	농업축산과 (축산방역팀)	순창군 축·수산물발전 및 가축방역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호	도지사	전북특별자치도지사
18	장류산업사업소 (장류특구팀)	순창 전통장류 육성과 특산단지 운영 조례	제3조제1항	전라북도고시	전북특별자치도고시
19	장류산업사업소 (장류산업팀)	순창군 장류체험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제3호	도지사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30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 이송된 순창군 청렴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를 공포한다.

2026년 4월 15일

### 순 창 군 수

순창군 조례 제3049호

## 순창군 청렴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

순창군 청렴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부터 제11조까지를 각각 제8조부터 제12조까지로 하고, 제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청렴정책회의 운영) ① 군수는 반부패·청렴정책의 추진 및 점검을 위하여 청렴정책회의를 분기별 1회 이상 개최하여야 한다.

② 청렴정책회의 참석 대상자는 군수, 부군수, 국장 및 실·과장, 사업소장 및 읍·면장으로 한다.

③ 청렴정책회의는 군수가 주재하되, 군수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군수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중전의 제7조) 제1항제2호 중 “운동” 을 “집중 기간 운영” 으로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lt;신 설&gt;</u></p> <p><u>제7조</u>(사업시행 등) ① 군수는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p> <p>1. (생 략)</p> <p>2. 청렴문화 조성을 위한 청렴 실천 <u>운동</u></p> <p>3. ~ 6. (생 략)</p> <p>②·③ (생 략)</p> <p><u>제8조 ~ 제11조</u> (생 략)</p>	<p><u>제7조</u>(청렴정책회의 운영) ① 군수는 반부패·청렴정책의 추진 및 점검을 위하여 청렴정책회의를 분기별 1회 이상 개최하여야 한다.</p> <p>② 청렴정책회의 참석 대상자는 군수, 부군수, 국장 및 실·과장, 사업소장 및 읍·면장으로 한다.</p> <p>③ 청렴정책회의는 군수가 주재하되, 군수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군수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p> <p><u>제8조</u>(사업시행 등) ① ----- ----- -----.</p> <p>1. (현행과 같음)</p> <p>2. ----- <u>집중 기간 운영</u></p> <p>3. ~ 6. (현행과 같음)</p> <p>②·③ (현행과 같음)</p> <p><u>제9조 ~ 제12조</u> (현행 제8조부터 제11조까지와 같음)</p>

제30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 이송된 순창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를 공포한다.

2026년 4월 15일

### 순 창 군 수

순창군 조례 제3050호

## 순창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

순창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를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순창읍 순화리 옥천5의 7반에서 9반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나. 순창읍 남계리 동은4 각 반의 관할구역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읍면명	리명	리장 정수	분리명	반명	관할구역
순창읍	남계	17	동은4	1	광명메이루즈아파트 101동 1라인
				2	광명메이루즈아파트 101동 2라인
				3	광명메이루즈아파트 102동 1라인
				4	광명메이루즈아파트 102동 2라인
				5	광명메이루즈아파트 102동 3라인

다. 동계면 내령리 분리명 중 “내월” 을 “내령” 으로 한다.

라. 적성면 운림리 분리명 중 “암동” 을 “임동” 으로 한다.

마. 금과면 고례리 송정의 1반 다음에 2반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읍면명	리명	리장 정수	분리명	반명	관할구역
금과면	고례	2	송정	2	비암산, 황토촌 일원

바. 팔덕면 청계리 리장정수 “3” 을 “4” 로 한다.

사. 북흥면 상송리 상송의 1반을 삭제하고, 2반에서 3반까지를 각각 1반에서 2반  
까지로 한다.

아. 쌍치면 옥산리 무동의 2반을 삭제하고, 옥산리 분리명 중 “원옥” 을 “옥산”  
으로 한다.

자. 쌍치면 옥산리 옥산(중전의 원옥)의 1반 관할구역란 중 “옥산” 을 “옥산,  
가리개” 로 하고, 1반 다음에 2반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읍면명	리명	리장 정수	분리명	반명	관할구역
쌍치면	옥산	4	옥산	2	사리실, 무지개

차. 쌍치면 쌍계리 금계1의 2반에서 4반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1반 관할구역란 중  
“시장윗뜸” 을 “금계1 일원” 으로 한다.

카. 쌍치면 금성리 분리명 중 “상촌” 을 “신촌” 으로 한다.

타. 합계 중 반명 수 “670” 을 “664” 로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물대비표

개정안						현행								
[별표 2]						[별표 2]								
읍면명	리명	리장정수	분리명	반명	관할구역	읍면명	리명	리장정수	분리명	반명	관할구역			
순화	순화	16	옥천1~옥천4	1~6	(현행과 같음)	순화	순화	16	옥천1~옥천4	1~6	(생략)			
			옥천5	<삭제>	온리뷰아파트 201동 1,2라인				7	(생략)				
				<삭제>	온리뷰아파트 202동 3,4라인				8	(생략)				
				<삭제>	온리뷰아파트 202동 1,2,3라인				9	(생략)				
순창읍	남계	17	옥천6~관서		(현행과 같음)	순창읍	남계	17	남계~동은3	1	101동 1라인			
			동은4		남계~동은3				2	101동 2라인				
					남계~동은3				3	102동 1라인				
					남계~동은3				4	102동 2라인				
					남계~동은3				5	102동 3라인				
순창읍	남계	17	동은5~대동진원	1	광명메이투즈아파트 101동 1라인	동은5~대동진원	(생략)	동은5~대동진원			(생략)			
			내령	2	광명메이투즈아파트 101동 2라인	동계면	내령	2	(생략)	내령	1~2	(생략)		
				임동	2	광명메이투즈아파트 102동 1라인	적성면	운림	2	(생략)	임동	1~4	(생략)	
			고례		1	광명메이투즈아파트 102동 2라인	금과면	고례	1	(생략)	고례	1~3	(생략)	
				송정	1	광명메이투즈아파트 102동 3라인	팔덕면	송정	1	<신설>	송정	1	<신설>	
			2		비암산, 황토촌 일원	팔덕면	2	(현행과 같음)	팔덕면	청계	3	상죽~진원	(생략)	
			순창읍	남계	17	상송	<삭제>	(현행과 같음)	순창읍	상송	1	상송	1	송정
						2	상송	2				(생략)		
						1	상송	3				(생략)		
						1	상송	1				(생략)		
순창읍	남계	17	무동	<삭제>	(현행과 같음)	순창읍	옥산	4	무동	2	가리개			
			1	무동	1				(생략)					

개 정 안							
[별표 2]							
읍면명	리명	리장 정수	분리명	반명	관할구역		
쌍치면	읍산	4	읍산	1	읍산, 가리개		
				2	사리실, 무지개		
					(현행과 같음)		
쌍치면	쌍계	3	금계1	1	금계1 일원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쌍치면	쌍계	3	금계2~만계		(현행과 같음)		
				내동~피노		(현행과 같음)	
					신촌	1	(현행과 같음)
합계				664			
[별표 2]							
읍면명	리명	리장 정수	분리명	반명	관할구역		
쌍치면	읍산	4	원우	1	읍산		
				<신 설>	<신 설>		
					(생략)		
				1	시장앞뜰		
쌍치면	쌍계	3	금계1	2	시장아랫뜰 ~ 너랭이뜰		
				3	삼실		
				4	너랭이		
					(생략)		
쌍치면	쌍계	3	금계2~만계		(생략)		
				내동~피노		(생략)	
					상촌	1	(생략)
합계				670			

제30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 이송된 순창군 돌봄 통합 지원에 관한 조례를 공포한다.

2026년 4월 15일

순 창 군 수

순창군 조례 제3051호

## 순창군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계속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료·요양 등 돌봄 지원을 통합·연계하여 제공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돌봄 통합지원”이란 제3호에 따른 돌봄 통합지원 대상자가 우리 지역에서 계속하여 건강하게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보건의료, 건강관리, 장기요양, 일상생활돌봄, 사회복지 등의 돌봄 통합지원 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와 지원을 직접 또는 연계하여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2. “돌봄 통합지원 관련기관”이란 돌봄 통합지원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순창군 관련 부서·개인·법인·기관·단체 등을 말한다.
3. “돌봄 통합지원 대상자”란 순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가. 65세 이상의 사람 중 돌봄 통합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 나.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심한 장애인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중 돌봄 통합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다. 그 밖에 질병, 사고 등으로 인하여 스스로 생활이 어렵게 되어 돌봄 통합 지원이 필요하다고 순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정하는 사람

제3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돌봄 통합지원을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제반 여건을 조성하고 지역의 실정에 적합한 정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과 인력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역계획 수립 및 시행) ① 군수는 돌봄 통합지원 제공을 위하여 순창군 돌봄 통합지원 지역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지역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돌봄 통합지원 전달체계의 조직·운영에 관한 사항
2. 돌봄 통합지원 대상자의 발굴과 지원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3. 돌봄 통합지원 재원 조달과 운용에 관한 사항
4. 돌봄 통합지원 관련 부서·기관 간의 연계·협력 방안
5. 돌봄 통합지원 분야별 추진 내용 및 방법
6. 그밖에 돌봄 통합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지역계획 수립 시 「사회보장기본법」,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지역보건법」 등에 따른 계획을 고려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돌봄 통합지원 관련기관 등에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돌봄 통합지원사업) 군수는 돌봄 통합지원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돌봄 통합지원 대상자의 발굴·신청 및 조사에 관한 사업
2. 돌봄 통합지원 체계구축 및 연계지원 사업
3. 방문 진료·간호, 약물관리 등 재가 보건의료 및 건강증진사업
4. 노인성 질환, 만성질환 등 신체적·정신적 건강관리 및 예방사업

5. 독립적 일상생활 등을 위해 필요한 돌봄사업
6. 개인의 사정과 욕구를 감안한 지원계획 수립 및 지원사업
7. 퇴원환자에 대한 지역사회 복귀지원 사업
8. 지역사회 민관협력 돌봄지원 개발사업
9.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통합지원 회의) ① 군수는 돌봄 통합지원 대상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결정하기 위하여 통합지원 회의를 운영한다.

1. 돌봄 통합지원 대상자의 의료, 영양 및 돌봄 필요도 등에 대한 전문 기관의 조사·판정 결과를 바탕으로 한 종합판정
2. 종합판정에 따른 개인별 지원계획의 수립, 심의, 결정, 변경 및 서비스 종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돌봄 통합지원 제공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통합지원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 제9조에 따라 설치된 전담조직의 업무 담당자
2. 제2조제2호에 따른 돌봄 통합지원 관련기관에 종사하고 있는 전문가
3. 「의료·영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한 전문기관의 순창군 지역 업무 담당자
4. 그 밖에 의료, 주거, 돌봄 등 분야의 전문가 중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7조(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① 군수는 돌봄 통합지원 대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안내하여야 한다.

1. 돌봄 통합지원의 내용, 방법, 기간 및 제공 주체 등에 관한 사항
2. 돌봄 통합지원을 제공하는 기관 등이 둘 이상인 경우 상호 간 연계 방법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돌봄 통합지원 대상자의 사정과 욕구를 고려하여 통합지원회의 등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여야 한다.

제8조(돌봄 통합지원 제공 등) ① 군수는 제7조에 따라 개인별 지원계획이 수립된 경우 필요한 돌봄 통합지원을 직접 제공하거나 돌봄 통합지원 관련기관에 의뢰하여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의뢰를 받은 돌봄 통합지원 관련기관 등은 서비스 제공 여부와 내용 등을 결정하고, 군수에게 그 결정 및 변경사항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돌봄 통합지원 제공상황 및 돌봄 통합지원 대상자의 상태변화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하며, 점검결과에 따라 개인별 지원계획을 변경하거나 서비스를 조정 및 종결할 수 있다.

제9조(전담조직 설치) 군수는 지역 주민의 돌봄을 총괄하고 통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본청 내에 돌봄 통합지원 업무 조직과 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제10조(통합지원협의체) ① 군수는 법 제20조에 따라 돌봄 통합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돌봄 통합지원 관련기관 등과의 연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통합지원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지역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돌봄 통합지원 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
3. 돌봄 통합지원 관련기관 등과의 연계·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협의체의 구성 및 임기) ① 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운영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복지국장으로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보건의료원장, 돌봄 통합지원 관련 업무 담당 과장, 국민건강보험공단 남원임실순창지사장 등 전문기관의 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돌봄 통합지원 관련기관의 대표자
3. 순창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4. 그 밖에 군수가 돌봄 통합지원 사업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 ⑥ 협의체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돌봄 통합지원 관련 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제12조(회의 등) ①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

② 협의체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부의 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수당) 협의체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전문가·관계인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순창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사무의 위탁) ① 군수는 돌봄 통합지원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기관 또는 단체 등(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에게 위탁사무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수탁자 선정 절차 및 방법, 계약체결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순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를 따른다.

제15조(포상) 군수는 돌봄 통합지원사업 추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이나 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에 「순창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6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조례에서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을 인용한 경우에 해당 법령이나 조례 등이 개정되는 경우 개정된 사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30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 이송된 순창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를 공포한다.

2026년 4월 15일

순 창 군 수

순창군 조례 제3052호

## 순창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

순창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기업도시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 법 제75조의2 제1항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경감률은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간 100분의 50으로, 그 다음 3년간은 100분의 25로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8조(기업도시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 기업 등에 대한 감면) <u>법 제75조의2제1항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감면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u>	제8조(기업도시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 기업 등에 대한 감면) <u>법 제75조의2제1항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경감률은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간 100분의 50으로, 그 다음 3년간은 100분의 25으로 한다.</u>

제30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 이송된 순창군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를 공포한다.

2026년 4월 15일

순 창 군 수

순창군 조례 제3053호

## 순창군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

순창군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제2항에 따라 제적 및 폐기된 자료는 희망하는 개인, 기관 및 단체에 무상으로 배부할 수 있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조례에서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을 인용할 경우에 해당 법령이나 조례 등이 개정되는 경우 개정된 사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1조(자료의 교환, 이관, 제적 및 폐기) ① ~ ③ (생략)  <u>&lt;신 설&gt;</u>	제11조(자료의 교환, 이관, 제적 및 폐기) ① ~ ③ (현행과 같음)  <u>④ 제2항에 따라 제적 및 폐기된 자료는 희망하는 개인, 기관 및 단체에 무상으로 배부할 수 있다.</u>

제30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 이송된 순창군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를 공포한다.

2026년 4월 15일

순 창 군 수

순창군 조례 제3054호

## 순창군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

순창군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폐기 및 제적된 자료는 희망하는 개인, 기관 및 단체에 무상으로 배부할 수 있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조례에서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을 인용할 경우에 해당 법령이나 조례 등이 개정되는 경우 개정된 사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6조(자료의 교환·이관·폐기 및 제적) ① ~ ② (생략)  <u>&lt;신 설&gt;</u>	제16조(자료의 교환·이관·폐기 및 제적) ① ~ ② (현행과 같음)  <u>③ 제1항에 따라 폐기 및 제적된 자료는 희망하는 개인, 기관 및 단체에 무상으로 배부할 수 있다</u>

제30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 이송된 순창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 일부개정 조례를 공포한다.

2026년 4월 15일

순 창 군 수

순창군 조례 제3055호

## 순창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

순창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부터 제22조까지를 각각 제16조부터 제25조까지로 하고, 제12조의1부터 제12조의3까지를 각각 제15조의2부터 제15조의4까지로 하며, 제8조부터 제12조까지를 각각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로 하고, 제7조를 제8조 한다.

제7조, 제9조 및 제10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임시시장의 개설 및 신고 등) ① 군수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임시시장을 직접 개설하거나, 신고에 의하여 개설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토지의 면적 기준으로 1천 제곱미터 이상 또는 건축물의 연면적 기준으로 1천 제곱미터 이상인 임시시장을 개설하려는 자(군수는 제외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임시시장 개설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군수는 신고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를 수리하고, 지체없이 별지 제2호서식의 임시시장 신고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별지 제3호서식의 임시시장 개설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임시시장의 사용료) 임시시장의 사용료는 「순창군 시장 사용 및 관리 조례」 별표 2에서 정한 정기시장의 종일 또는 일시사용 중 노점 종일사용자 기준을 따르며, 사용허가 시 전액 선납을 원칙으로 한다.

제10조(임시시장의 폐쇄) 군수는 임시시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시시장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시시장 개설 신고를 한 경우
2. 임시시장 개설신고서상 개설하기로 한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10일 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30일 이상 계속 휴업한 경우
3.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저해하고 소비자에게 피해를 준 경우
4. 그 밖에 관련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한 경우

제8조(중전의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임시시장의 관리) 임시시장을 개설한 자는 임시시장이 시장의 기능을 원활히 유지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시설의 유지 및 관리
2. 화재의 예방, 청소 및 방법 활동
3. 고객의 안전유지 및 고객과 인근지역 주민의 피해·불만의 처리
4. 상거래 질서의 확립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조례에서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을 인용한 경우에 해당 법령이나 조례 등이 개정되는 경우 개정된 사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별지 제1호서식]

## 임시시장 개설신고서

※ 뒤쪽의 처리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5일
------	-----	------	----

임시시장 개요	시장명		개설자 성명		
	소재지		전화번호		
	개설 기간				
	시장규모	토지 면적:        m <sup>2</sup> ,	건물 연면적:        m <sup>2</sup> ,	영업장 면적:        m <sup>2</sup> ,	점포 수:        개
	입점상인 수				
	개설 사유				

상인 조직	명칭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설립일		회원 수		

시설 현황	주요시설	건축물:        층    동,        층    동,        층    동			
		장옥(場屋):        동			
	편의시설	화장실:        개,    주차장:        m <sup>2</sup> ,    기타:			

「순창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순창군수    귀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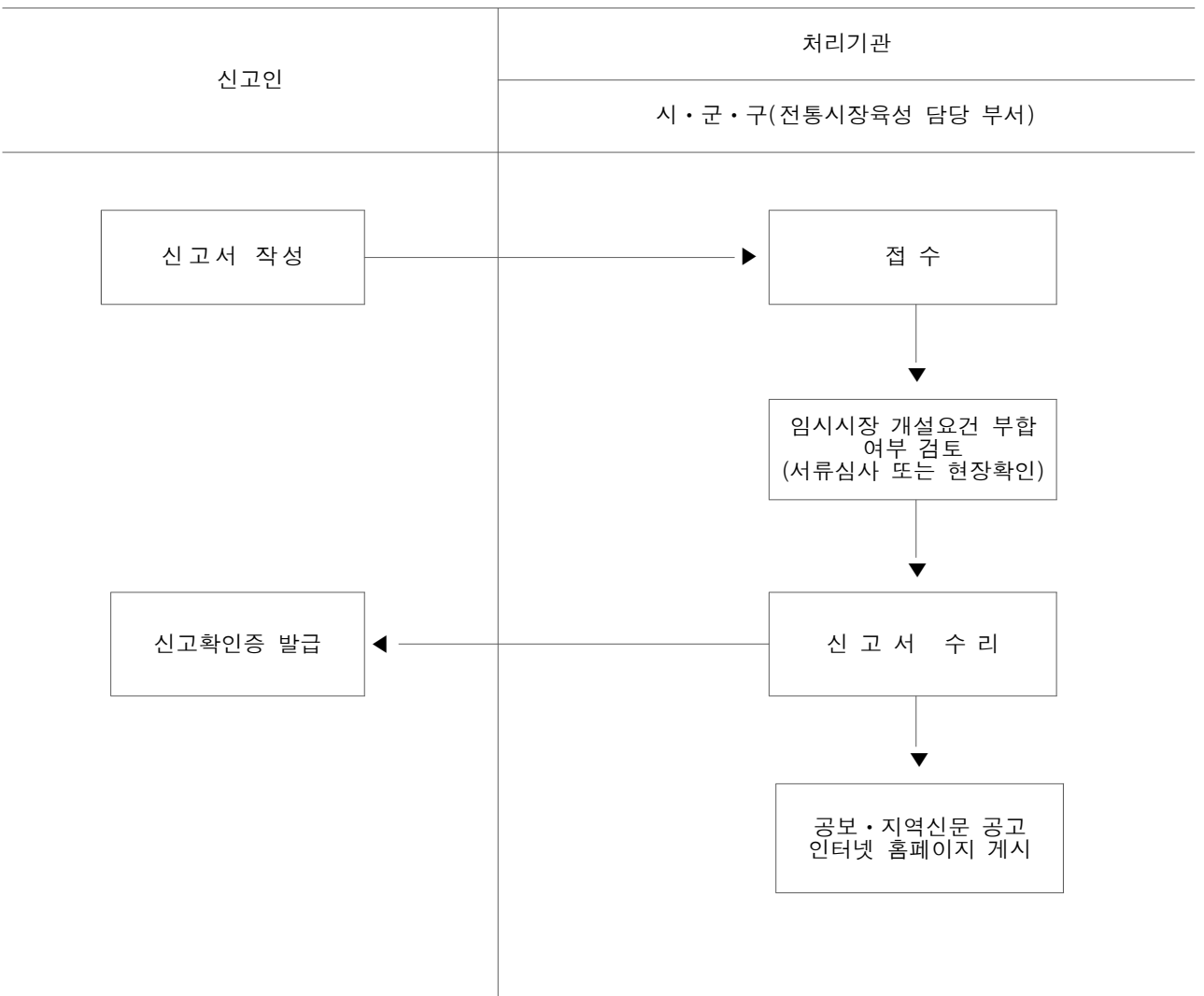
첨부서류	1. 점포의 분양계획이 포함된 임시시장의 운영 및 관리계획 1부 2. 임시시장으로 개설을 하려는 구역을 표시한 도면 1부 3. 임시시장으로 개설을 하려는 구역에 해당하는 지번과 면적 1부 4. 국·공유지나 도로의 사용승인신청서 또는 토지소유자가 사용을 동의한 서류 1부	수수료 없음
------	---	-----------

210mm×297mm[백상지 80g/ m<sup>2</sup>]

(뒤쪽)

처리절차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별지 제2호서식]

제 호

# 임시시장 신고확인증

- 1. 시장 명:
- 2. 개 설 자:
- 3. 소 재 지:
- 4. 시장 면적:
- 5. 개설 기간:

「순창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7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임시시장으로 신고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순창군수

직인

[별지 제3호 서식]

임시시장 개설대장								
개 설 년월일	시 장 명	소재지	개설 기간	개설자			대지 면적 (㎡)	매장 면적 (㎡)
				주 소	성 명	생년 월일		

신 · 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p><u>&lt;신 설&gt;</u></p> <p>제7조(임시시장의 관리) ① 법 제14조에 따라 임시시장을 개설한 자는 임시시장의 기능을 원활히 유지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시설의 유지 및 관리</li> <li>2. 화재의 예방, 청소 및 방범 활동</li> <li>3. 고객의 안전유지 및 고객과 인근지역 주민의 피해·불만의 처리</li> <li>4. 상거래 질서의 확립</li> </ol> <p>② 군수가 직접 개설한 임시시장은 시장관리자를 지정·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p> <p><u>&lt;신 설&gt;</u></p>	<p>제7조(임시시장의 개설 및 신고 등) ① 군수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임시시장을 직접 개설하거나, 신고에 의하여 개설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라 토지의 면적 기준으로 1천 제곱미터 이상또는 건축물의 연면적 기준으로 1천 제곱미터 이상인 임시시장을 개설하려는 자(군수는 제외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임시시장 개설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③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군수는 신고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를 수리하고, 지체없이 별지 제2호서식의 임시시장 신고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별지 제3호서식의 임시시장 개설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p> <p>제8조(임시시장의 관리) 임시시장을 개설한 자는 임시시장이 시장의 기능을 원활히 유지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시설의 유지 및 관리</li> <li>2. 화재의 예방, 청소 및 방범 활동</li> <li>3. 고객의 안전유지 및 고객과 인근지역 주민의 피해·불만의 처리</li> <li>4. 상거래 질서의 확립</li> </ol> <p>제9조(임시시장의 사용료) 임시시장의 사용료는 「순창군 시장 사용 및 관리 조례」의 별표 2에서 정한 정기시장의 종일 또는 일시사용료 중 노점 종일사용자 기준을 따르며, 사용허가 시 전액 선납을 원칙으로 한다.</p>

현행	개정안
<p><u>&lt;신 설&gt;</u></p> <p><u>제8조 ~ 제12조</u> (생략)</p> <p><u>제12조의1 ~ 제12조의3</u> (생략)</p> <p><u>제13조 ~ 제22조</u> (생략)</p>	<p><u>제10조(임시시장의 폐쇄)</u> 군수는 임시시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시시장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시시장 개설 신고를 한 경우</li> <li>2. 임시시장 개설신고서상 개설하기로 한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10일 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30일 이상 계속 휴업한 경우</li> <li>3.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저해하고 소비자에게 피해를 준 경우</li> <li>4. 그 밖에 관련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한 경우</li> </ol> <p><u>제11조 ~ 제15조</u> (현행 제8조부터 제12조까지와 같음)</p> <p><u>제15조의2 ~ 제15조의4</u> (현행 제12조의1부터 제12조의3까지와 같음)</p> <p><u>제16조 ~ 제25조</u> (현행 제13부터 제22조까지와 같음)</p>

제30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 이송된 순창군 순창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를 공포한다.

2026년 4월 15일

순 창 군 수

순창군 조례 제3056호

## 순창군 순창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

순창군 순창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 제목을 “상품권의 발행 및 판매” 에서 “상품권의 발행 및 판매·유통” 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상품권은 군수가 발행하며, 유통 지역은 순창군 일원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따로 지정할 수 있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조례에서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을 인용한 경우에 해당 법령이나 조례 등이 개정되는 경우 개정된 사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3조(상품권의 발행 및 판매) ①상품권은 군수가 발행한다.</p> <p>② ~ ④ (생략)</p>	<p>제3조(상품권의 발행 및 판매·유통) ① 상품권은 군수가 발행하며, 유통 지역은 순창군 일원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따로 지정할 수 있다.</p> <p>② ~ ④ (현행과 같음)</p>

제30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 이송된 순창군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를 공포한다.

2026년 4월 15일

순 창 군 수

순창군 조례 제3057호

## 순창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순창군에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조성한 각종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이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및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개발사업을 말한다.
2.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이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을 통해 조성한 기초 생활기반, 지역소득증대 및 지역경관개선시설, 주민편익시설 등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순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시행한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시설물에 대하여 적용하며, 주요 시설물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 제2장 시설의 운영

제4조(운영·관리) ①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은 직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부서장이나

시설물 소재지 읍·면장에게 운영·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임할 수 있다.

② 순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시설물 관리와 프로그램 운영 등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읍·면장에게 시설물 운영·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임한 경우에는 「순창군 읍·면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순창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및 「순창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등을 따른다.

제5조(관리위탁) ① 군수는 제4조에도 불구하고 시설물의 능률적·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순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단체에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의5제1항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1.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행지침에 따른 추진(운영)위원회 또는 해당 위원회에 기초한 공동사업법인
2.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이 위치한 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마을회, 지역 공동체영농조합법인, 협동조합, 주민자치위원회
3. 「순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서 수의계약 대상으로 정한 경우

제6조(위탁료) 군수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시설물 운영·관리에 따른 예상수익을 고려하여 관리위탁을 받은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에게 위탁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7조(위탁기간) ① 시설물의 관리위탁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3항에 따라 관리수탁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 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8조(경비의 지원 등) ① 시설물의 운영·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는 이용료 등의 발생 수입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물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관리위탁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시설물의 유지 보수비
2. 시설물의 운영·관리에 소요되는 전기, 수도, 통신, 무인경비 등 공공요금
3. 시설물의 운영·관리를 위한 최소한의 필수 인력에 대한 인건비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설물의 내구연수가 증가하거나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시설물 수리·보수는 군수가 직접 시행한다.

③ 제1항제2호, 제3호에 따른 지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1. 소득 창출 시설물이 없는 경우
2.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위탁시설인 경우
3. 당해년도 발생 소득이 손익분기점을 초과하지 못하였을 때,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인정받은 경우

제9조(관리수탁자의 의무) ① 관리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시설물의 구조 또는 위·수탁 조건 등 운영에 필요한 주요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0조(계약의 해지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 계약을 해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1. 관리수탁자가 관리위탁 계약조건을 위반한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계약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3. 관리수탁자가 시설물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능력이 없는 경우
4.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관리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된 경우 즉시 시설과 장비 등 일체를 군수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 제3장 시설의 이용

제11조(이용료) ①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시설물 이용자” 라 한다)는 별표 2에 따른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5조에 따라 위탁운영을 하는 경우에는 관리수탁자가 별표 2에서 정한 이용료의 10 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가감 조정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의 승인을 미리 받아야 하며, 승인받은 이용료는 시설물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2조(이용료의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2.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생활기반조성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제13조(이용료의 반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천재지변 등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이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전액환불
2. 군수가 공익상 필요에 따라 사용을 취소 또는 제한하였을 경우: 전액환불
3. 이용일 3일 전까지 미리 신고하여 이용허가를 취소하였을 경우: 전액환불
4. 이용일 1일 전까지 미리 신고하여 이용허가를 취소하였을 경우: 50퍼센트 환불

제14조(이용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물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질서 및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감염병 관련 등 시설물 관리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시설물의 개수·보수를 실시하는 경우
4. 시설물 이용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5. 천재지변 등으로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경우
6. 그 밖에 군수가 시설의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5조(손해보험 가입) 군수 또는 관리수탁자는 시설물 이용자 등의 재산 및

신체의 손실에 대한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6조(지도·감독) ① 관리수탁자는 현금출납부 등 시설물 운영·관리 전반에 관한 장부와 서류 일체를 비치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리수탁자에게 시설물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관련 사항을 조사하고 지도·감독하게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지도·감독 결과 시정해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리위탁의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체결한 시설물에 대한 관리위탁은 이 조례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조례에서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을 인용한 경우에 해당 법령이나 조례 등이 개정되는 경우 개정된 사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별표 1]

##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명칭 및 위치(제3조 관련)

주요시설 명칭	연면적	위치(주 사업장 주소)
인계면 다시청춘관	640m <sup>2</sup>	순창군 인계면 인덕로 253-8 (순창군 인계면 도룡리 1391번지)
인계면 세탁봉사센터	117m <sup>2</sup>	순창군 인계면 도룡리 870-3번지
적성면 문화복지센터	947m <sup>2</sup>	순창군 적성면 적성로 138 (적성면 고원리 735-3번지)
유등면 주민복지센터	977m <sup>2</sup>	순창군 유등면 외이2길 4 (순창군 유등면 외이리 608번지)
풍산면 산울림센터	783m <sup>2</sup>	순창군 풍산면 금풍로 1006-8 (순창군 풍산면 반월리 783-2번지)
금과면 생활체육관	952m <sup>2</sup>	순창군 금과면 매우1길 3 (순창군 금과면 매우리 156-1번지)
금과면 게이트볼장	600m <sup>2</sup>	순창군 금과면 금풍로 171 (순창군 금과면 매우리 158-2번지)
금과면 설공찬문학관	169m <sup>2</sup>	순창군 금과면 금풍로 172-1 (순창군 금과면 매우리 162-2번지)
팔덕면 디딤돌센터	997m <sup>2</sup>	순창군 팔덕면 용산길 9 (순창군 팔덕면 용산리 342-1번지)
복흥면 복지회관	977m <sup>2</sup>	순창군 복흥면 추령로 1161 (순창군 복흥면 정산리 326-4번지)
복흥면 체육관	940m <sup>2</sup>	순창군 복흥면 추령로 1126 (순창군 복흥면 정산리 389-1번지)
쌍치면 문화센터	748m <sup>2</sup>	순창군 쌍치면 쌍계로 17 (순창군 쌍치면 쌍계리 454-1번지)
쌍치면 게이트볼장	2,381m <sup>2</sup>	순창군 쌍치면 쌍계로 56 (순창군 쌍치면 쌍계리 282-2번지)
구림면 복지센터	858m <sup>2</sup>	순창군 구림면 연산2길 16 (순창군 구림면 운남리 247-3번지)

[별표 2]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이용료 기준(제11조 관련)

구 분	사용목적	이용기준	면 적	금액	비고
공동시설	회의, 교육, 조리실 등	1시간	50㎡ 이하	10,000원	부대시설 포함
			50㎡ 초과 - 100㎡ 이하	15,000원	
			100㎡ 초과 - 150㎡ 이하	20,000원	
			150㎡ 초과 - 200㎡ 이하	25,000원	
			200㎡ 초과	30,000원	

&lt;비고&gt;

1. 이용료는 최초 1시간을 기준으로 하고, 1시간이 초과할 때마다 50%를 가산한다.
2. 시설물의 이용료를 정한 별도의 조례가 있는 경우 관련 조례를 우선 적용한다.

제30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 이송된 순창군 금연지도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를 공포한다.

2026년 4월 15일

순 창 군 수

순창군 조례 제3058호

## 순창군 금연지도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

순창군 금연지도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금연지도원에게 1일 최대 5시간 범위에서 「최저임금법」에 따른 해당 연도 최저임금액을 활동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 ③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도 업무 수행에 필요한 피복비 및 상해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조례에서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을 인용한 경우에 해당 법령이나 조례 등이 개정되는 경우 개정된 사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7조(금연지도원의 활동수당 지급) ① <u>군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금연지도원에게 1일(5시간 이상 근무)당 4만원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금액을 활동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금연지도원이 야간, 새벽, 휴일 등에 활동하는 경우에는 1일당 최대 6만원까지 활동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u></p> <p>② (생략)</p> <p><u>&lt;신설&gt;</u></p>	<p>제7조(금연지도원의 활동수당 지급) ① <u>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금연지도원에게 1일 최대 5시간 범위에서 「최저임금법」에 따른 해당 연도 최저임금액을 활동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u></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u>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도 업무 수행에 필요한 피복비 및 상해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다.</u></p>

제30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 이송된 순창군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를 공포한다.

2026년 4월 15일

순 창 군 수

순창군 조례 제3059호

## 순창군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

순창군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설” 을 “농산물종합가공센터” 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농산물종합가공센터” 를 “제1농산물종합가공센터, 제2농산물종합가공센터” 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유등면 담순로 1548” 을 “유등면 담순로 1548, 유등면 건곡로 200” 으로 한다.

제3조제1호, 같은 조 제4호 및 제6호 중 “가공센터” 를 각각 “농산물 가공센터” 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과” 를 “다음 각 호와” 로 하고, 같은 조에 가목부터 아목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 제1농산물종합가공센터

가. 전처리실(세척기, 자외선 살균기 등)

나. 제조실(강정비빔기, 절단기, 누름기, 곡물펼핑기, 누룽지기, 덩음기, 초밥기 등)

- 다. 건조실(동결건조기, 열풍건조기, 급속 동결기 등)
- 라. 포장실(스틱포장기, 금속검출기, 삼면포장기, 밴드실러 등)
- 마. 사무실
- 바. 탈의실
- 사. 기타 시설

## 2. 제2농산물종합가공센터

- 가. 전처리실(와류세척기, 와곤, 고속스크류착즙기, 진동여과채, 다이서 등)
- 나. 음료제조실(가열교반탱크, 추출탱크, 진공농축기, 믹싱호퍼, 여과기 등)
- 다. 내포장실(캡핑기, 스파우트포장기, 스탠딩포장기, 롤포장기, 에어세병기, 냉각기 등)
- 라. 외포장실(열탕소독기, 금속검출기, 포장작업대, 파우치제수기, 중량선별기 등)
- 마. 기계실(산업용스팀보일러, 콤프레샤, 냉각철러 등)
- 바. 사무실
- 사. 탈의실
- 아. 기타 시설

제6조제1항 중 “가공센터의” 를 “농산물 가공센터의”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포함한” 을 “포함하여” 로,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를 “구성한다” 로 하며, 같은 항 각 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③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 소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④ 당연직 위원은 산림공원과장, 농업축산과장, 농업기술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농산물 가공창업 아카데미 교육 수료생
  2. 가공분야 전문가
  3. HACCP 전문가
  4. 생산자 단체 중에서 각 단체대표자가 추천한 자

제10조 본문 중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를 “농산물 가공센터” 로 한다.

제13조제2호 중 “ “식품제조가공업” , “유통전문판매업” 등” 을 “식품제조가공업, 유통전문판매업, 통신판매업 등” 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가공원료가 HACCP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8. 품질관리 및 안전관리 준수사항을 미이행한 경우
9. 제조원에서 요구하는 서류가 부적절할 경우

제16조제1호 중 “가공기술개발” 을 “가공제품개발” 로, “연구” 를 “연구를 하는 경우” 로 한다.

제23조 앞의 “제5장 보칙” 을 삭제한다.

제18조 앞의 “제4장 위탁운영” 을 삭제한다.

제18조부터 제24조까지를 각각 제19조부터 제25조까지로 하고,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사용자의 의무와 책임) 사용자는 농산물 가공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의무와 책임을 갖는다.

1. 가공시설을 이용한 제품의 제조·유통·판매 관련 법규 준수
  2. 사용자의 과실로 인한 가공시설의 손상 및 분실에 대한 실비보상
  3. 사용기간 중 안전관리 수칙 및 장비사용의 준수사항 이행
- ② 사용자는 제품의 안전성과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제품의 제조·유통·판매 등 모든 공정에 참여하여야 한다.

제19조(중전의 제18조) 제1항 중 “가공센터” 를 “농산물 가공센터” 로 한다.

제20조(중전의 제19조)의 제목 “(협약해제)”를 “(위탁의 취소)”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협약을 해제하고, 사용”을 “위탁을 취소하고, 운영”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21조”를 “제22조”로, “위탁계약”을 “위탁”으로, “정지”를 “중단”으로 한다.

제21조(중전의 제20조)제1항 중 “가공센터”를 “농산물 가공센터”로 한다.

제22조(중전의 제21조)제1항 중 “가공센터”를 “농산물 가공센터”로, “협약을 해제”를 “위탁을 취소”로 한다.

제23조(중전의 제22조)제1항제1호를 삭제한다.

제19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4장 위탁운영

제24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5장 보칙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조례에서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을 인용한 경우에 해당 법령이나 조례 등이 개정되는 경우 개정된 사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2조 (명칭과 위치) <u>시설</u>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과 같다.</p> <p>1. 명칭 : 순창군 <u>농산물종합가공센터</u></p> <p>2. 위치 : 순창군 <u>유등면 담순로 1548</u> (순창군 농업기술센터 내)</p> <p>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p>1.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이하 “<u>가공센터</u>” 라 한다)란 농산물을 기계나 사람의 힘을 이용하여 형태나 성질을 변화시킨 제품을 생산하는 가공 시설을 말한다.(사무실, 부대시설 포함)</p> <p>2. · 3. (생략)</p> <p>4. “사용자”란 <u>가공센터</u>의 시설 사용을 허가받은 자를 말한다.</p> <p>5. (생략)</p> <p>6. “제품”이란 <u>가공센터</u>에서 생산한 시제품, 반제품을 포함한 상품 등 생산물 일체를 말한다.</p> <p>제4조 (시설) 농산물 가공센터의 시설은 <u>다음과</u> 같이 구분한다.</p> <p><u>가. 전처리실(버블세척기, 잼제조기, 착즙기, 냉장·냉동 저장고, 발효탱크 등)</u></p> <p><u>나. 건조실(동결건조기, 열풍건조기, 급속 동결기, 분쇄기 등)</u></p> <p><u>다. 내포장실(충진기, 캡핑기, 파우치포장기, 냉각기 등)</u></p> <p><u>라. 외포장실(삼면포장기 등)</u></p> <p><u>마. 기계실(증기보일러, 콤프레샤, 응축수 탱크 등)</u></p>	<p>제2조 (명칭과 위치) <u>농산물종합가공센터</u> -----.</p> <p>1. ----- <u>제1농산물종합가공센터, 제2농산물종합가공센터</u></p> <p>2. -----<u>유등면 담순로 1548, 유등면 건곡로 200</u> -----</p> <p>제3조 (정의) -----</p> <p>-----.</p> <p>1. ----- “<u>농산물 가공센터</u>” -----</p> <p>-----</p> <p>-----</p> <p>2. · 3. (현행과 같음)</p> <p>4. ----- <u>농산물 가공센터</u> -----</p> <p>-----.</p> <p>5. (현행과 같음)</p> <p>6. -----<u>농산물 가공센터</u> -----</p> <p>-----.</p> <p>제4조(시설) 농산물 가공센터의 시설은 <u>다음 각 호와</u> 같이 구분한다.</p> <p>&lt;삭 제&gt;</p> <p>&lt;삭 제&gt;</p> <p>&lt;삭 제&gt;</p> <p>&lt;삭 제&gt;</p> <p>&lt;삭 제&gt;</p>



현행	개정안
<p>다.</p> <p>② 위원회는 위원장·부위원장 각 1명을 <u>포함한</u> 15명 이내로 <u>다음과 같이 구성한다.</u></p> <p>1. <u>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당연직으로 한다.</u></p> <p>2. <u>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u></p> <p>3. <u>위원은 산림공원과장, 농업축산과장, 농업기술과장은 당연직으로 하며 농산물 가공창업 아카데미 교육 수료생, 생산자 단체 중에서 각 단체대표자가 추천한자 중에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한다.</u></p> <p>4. <u>간사는 농산물 가공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u></p> <p>5. <u>당연직은 전체 위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다.</u></p> <p><u>&lt;신 설&gt;</u></p> <p>③ (생략)</p> <p>④ <u>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재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u></p> <p>제10조 (운영) <u>농산물 종합가공센터는 순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운영한다.</u> 단, 농산물 가공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및 사용허가 할 수 있다.</p>	<p>--.</p> <p>② ----- <u>포함하여</u> ----- <u>구성한다.</u></p> <p><u>&lt;삭 제&gt;</u></p> <p><u>&lt;삭 제&gt;</u></p> <p><u>&lt;삭 제&gt;</u></p> <p><u>&lt;삭 제&gt;</u></p> <p><u>&lt;삭 제&gt;</u></p> <p>③ <u>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 소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u></p> <p>⑤ (현행 제3항과 같음)</p> <p>④ <u>당연직 위원은 산림공원과장, 농업축산과장, 농업기술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u> 다만,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p> <p>1. <u>농산물 가공창업 아카데미 교육 수료생</u></p> <p>2. <u>가공분야 전문가</u></p> <p>3. <u>HACCP 전문가</u></p> <p>4. <u>생산자 단체 중에서 각 단체대표자가 추천한 자</u></p> <p>제10조 (운영) <u>농산물 가공센터-----</u> ----- ----- -----</p>

현행	개정안
<p>제13조 (사용허가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생략)</li> <li>2. <u>“식품제조가공업”, “유통전문판매업”</u> 등 제조 및 판매허가 없이 농산물을 가공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li> <li>3. ~ 6. (생략)</li> </ol> <p>&lt;신설&gt;</p> <p>&lt;신설&gt;</p> <p>&lt;신설&gt;</p>	<p>제13조 (사용허가의 제한) ----- -----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현행과 같음)</li> <li>2. <u>식품제조가공업, 유통전문판매업, 통신 판매업 등 -----</u> -----</li> <li>3. ~ 6. (현행과 같음)</li> <li>7. <u>가공원료가 HACCP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u></li> <li>8. <u>품질관리 및 안전관리 준수사항을 미이행한 경우</u></li> <li>9. <u>제조원에서 요구하는 서류가 부적절할 경우</u></li> </ol>
<p>제16조 (사용료의 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농산물의 <u>가공기술개발</u>을 위한 시험 연구</li> <li>2. (생략)</li> </ol> <p>&lt;신설&gt;</p>	<p>제16조 (사용료의 면제) -----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 <u>가공제품개발</u>----- 연구를 하는 경우</li> <li>2. (현행과 같음)</li> </ol>
<p>제4장 위탁운영</p>	<p>제18조(사용자의 의무와 책임) 사용자는 농산물 가공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의무와 책임을 갖는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u>가공시설을 이용한 제품의 제조·유통·판매 관련 법규 준수</u></li> <li>2. <u>사용자의 과실로 인한 가공시설의 손상 및 분실에 대한 실비보상</u></li> <li>3. <u>사용기간 중 안전관리 수칙 및 장비사용의 준수사항 이행</u></li> </ol> <p>② <u>사용자는 제품의 안전성과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제품의 제조·유통·판매 등 모든 공정에 참여하여야 한다.</u></p> <p>&lt;삭제&gt;</p>

현행	개정안
<p style="text-align: center;"><b>&lt;신 설&gt;</b></p> <p><b>제18조(위탁) ①</b> <u>가공센터</u>를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이하 “수탁자” 라 한다)는 군수에게 위탁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순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수탁자를 선정해야 한다.</p> <p>② ~ ④ (생략)</p> <p><b>제19조(협약해제) ①</b>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경우에 <u>협약을 해제하고, 사용</u>을 제한, 중단할 수 있다.</p> <p>1. ~ 3. (생략)</p> <p>② 제1항제1호 및 <b>제21조</b>에 의하여 <u>위탁계약</u>을 취소하거나, 운영을 제한, <u>정지</u>할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배상하지 아니한다.</p> <p><b>제20조(변상) ①</b> 수탁자가 사용기간 중 과실 또는 무과실로 인하여 <u>가공센터</u>의 시설물을 훼손, 망실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 또는 손해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p> <p>② (생략)</p> <p><b>제21조(지도·감독) ①</b> 군수는 <u>가공센터</u>의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을 지도·감독하며, 수탁자에게 위탁한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u>협약을 해제</u>하거나 중지 또는 지정 시킬 수 있다.</p> <p>② ~ ④ (생략)</p> <p><b>제22조(제품의 반출 제한) ①</b>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제품반출을 제한 할 수 있다.</p> <p><b>1. 제품이 제조과정 중 품질기준에 미달한 경우</b></p>	<p style="text-align: center;"><b>제4장 위탁운영</b></p> <p><b>제19조(위탁) ①</b> <u>농산물 가공센터</u>----- ----- ----- -----</p> <p>② ~ ④ (현행과 같음)</p> <p><b>제20조(위탁의 취소) ①</b> -----<u>각 호의 어느 하나</u>-----<u>위탁을 취소하고, 운영</u>----- ----- 1. ~ 3. (현행과 같음)</p> <p>② -----<b>제22조</b>-----<u>위탁</u>----- -----<u>중단</u>----- ----- -----</p> <p><b>제21조(변상) ①</b> ----- -----<u>농산물 가공센터</u>----- ----- ----- -----</p> <p>② (현행과 같음)</p> <p><b>제22조(지도·감독) ①</b> --- <u>농산물 가공센터</u> ----- ----- -----<u>위탁을 취소</u>----- -----</p> <p>② ~ ④ (현행과 같음)</p> <p><b>제23조(제품의 반출 제한) ①</b> ----- ----- -----</p> <p style="text-align: center;"><b>&lt;삭 제&gt;</b></p>

현행	개정안
2. ~ 4. (생략) ② (생략) <u>제5장 보칙</u> <u>&lt;신설&gt;</u> <u>제23조·제24조</u> (생략)	2. ~ 4.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u>&lt;삭제&gt;</u> <u>제5장 보칙</u> <u>제24조·제25조</u> (현행 제23조 및 제24조와 같음)

제30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 이송된 순창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를 공포한다.

2026년 4월 15일

### 순 창 군 수

순창군 조례 제3060호

## 순창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

제10조제1항제7호에 자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자.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기복무 제대군인

제13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사용자는 체육시설에 입간판·현수막·벽보 등의 홍보물을 설치할 수 없다.  
(단, 대회 등 일시적인 행사 안내를 위한 홍보물은 예외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조례에서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을 인용한 경우에 해당 법령이나 조례 등이 개정되는 경우 개정된 사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10조(사용료 등 감면)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p> <p>1. ~ 6. (생략)</p> <p>7. 국가유공자 등 가. ~ 아. (생략)</p> <p><u>&lt;신설&gt;</u></p> <p>8. ~ 13. (생략)</p> <p>② ~ ④ (생략)</p>	<p>제10조(사용료 등 감면) ① ----- ----- -----.</p> <p>1. ~ 6. (현행과 같음)</p> <p>7. ----- 가. ~ 아. (현행과 같음)</p> <p><u>자.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기복무 제대군인</u></p> <p>8. ~ 13. (현행과 같음)</p> <p>② ~ ④ (현행과 같음)</p>
<p>제13조(사용자의 부대시설) ① ~ ③ (생략)</p> <p><u>&lt;신설&gt;</u></p>	<p>제13조(사용자의 부대시설) ① ~ ③ (현행과 같음)</p> <p><u>④ 사용자는 체육시설에 입간판·현수막·벽보 등의 홍보물을 설치할 수 없다.(단, 대회 등 일시적인 행사안내를 위한 홍보물은 예외로 한다)</u></p>

[별표 1]

### 체육시설현황(제2조 관련)

시 설 명	위 치	주 요 시 설	비고
공설운동장	순창읍 장류로 180	육상경기장, 인조잔디구장, 테니스장, 실내다목적구장(실내테니스장), 풋살장, 게이트볼장, 족구장, 역도연습장 등	
국민체육센터	순창읍 장류로 200	다목적 실내구장(마루바다), 에어로빅장 등	
장애인체육관	순창읍 장류로 407-11	실내체육관	
유등면 다목적체육시설	유등면 오교리 524-223	야외체육시설	
팔덕 다용도보조경기장	팔덕면 구룡리 42	축구장, 야구장 등	
실내야구연습장	팔덕면 신촌길 253	실내야구연습장	
생활체육운동장	순창읍 노동로 3	축구장, 야구장 등	
섬진강 체육공원	유등면 유등로 560-22	축구장, 농구장, 배구장, 족구장 등	
공공테니스장	순창읍 신촌길 178-10	테니스장 등	
궁도장	순창읍 담순로 1414-23	궁도장	
게이트볼장 및 생활체육시설	각 읍·면	전천후 게이트볼장, 동네체육시설 등	
인계면 체육관	인계면 인덕로 245	실내체육관	
동계면 체육관	동계면 현포리 520	실내체육관	
적성면 체육관	적성면 적성로 142	실내체육관	
적성면 실내 다목적구장	적성면 적성로 118	실내체육관	
풍산면 체육관	풍산면 금풍로 1006-11	실내체육관	
금과면 체육관	금과면 매우1길3	실내체육관	
팔덕면 체육관	팔덕면 용산길 13	실내체육관	
북흥면 체육관	북흥면 추령로 1126	실내체육관	
쌍치면 체육관	쌍치면 쌍계로 46-18	실내체육관	
구림면 체육관	구림면 연산2길 16	실내체육관	

## 순창군 고시 제2026 - 86호

### 「대가마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기본계획 고시

순창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25년 선정 대가마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새뜰마을사업)에 대하여 농어촌정비법 제59조 규정에 의거 기본계획을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3월 27일

순 창 군 수

1. 사업의 명칭 : 대가마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2. 사업의 목적
  - 취약지역 주민 기본적인 생활수준 보장을 위해 안전 위생 등 긴요한 생활 인프라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 주민역량강화 등 지원으로 지속 가능한 마을로 조성하기 위함.
3. 사업비 : 2,276백만원(균특 1,482 지방비 631 자부담 163)
4. 주요사업내용
  - 생활위생안전인프라
    - 마을안길포장(4,500㎡), 재래식화장실정비(22개소), 마을공동쓰레기장 설치(1개소), CCTV 설치(3개소), 소화전 설치(3개소)
  - 주택정비 : 빈집정비(16호), 슬레이트 지붕개량(49호), 집수리(34호)
  - 마을환경개선 : 노후담장정비(1,054m)
  - 휴먼케어·주민역량강화
  - 제경비 : 기본조사비, 세부설계비 등
5. 사업시행자 : 순창군수
6. 사업기간 : 2025. 1. ~ 2028. 12
7. 수용 또는 사용대상 토지의 명세서 (필요한 경우)
8. 기타 : 관계도서는 순창군 농촌활력과 농촌주거팀(650-1778)에 비치하여 열람가능

## 순창군 고시 제2026 - 87호

### 「매우마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기본계획 고시

순창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25년 선정 매우마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새뜰마을사업)에 대하여 농어촌정비법 제59조 규정에 의거 기본계획을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3월 27일  
순 창 군 수

1. 사업의 명칭 : 매우마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2. 사업의 목적
  - 취약지역 주민 기본적인 생활수준 보장을 위해 안전 위생 등  
긴요한 생활 인프라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 주민역량강화 등  
지원으로 지속 가능한 마을로 조성하기 위함.
3. 사업비 : 1,940백만원(균특 1,364 지방비 476 자부담 100)
4. 주요사업내용
  - 생활위생안전인프라
    - 산사태 방지 옹벽 설치(111㎡), 소화전 설치(5개소), 재래식  
화장실 정비(21개소), 공동 쓰레기집하장(1식), 정자 리모델  
링(1식), 텃밭 조성(1식)
  - 주택정비 : 빈집정비(10호), 슬레이트 지붕개량(14호), 집수리(33호)
  - 마을환경개선 : 노후담장정비(500m), 문패/우편함/국기봉 설치(46호)
  - 휴먼케어·주민역량강화
  - 제경비 : 기본조사비, 세부설계비 등
5. 사업시행자 : 순창군수
6. 사업기간 : 2025. 1. ~ 2028. 12
7. 수용 또는 사용대상 토지의 명세서 (필요한 경우)
8. 기타 : 관계도서는 순창군 농촌활력과 농촌주거팀(650-1778)에  
비치하여 열람가능

순창군고시 제2026-94호

## 강천산 군립공원계획 결정(변경) 고시

강천산 군립공원에 대하여 자연공원법 제14조 및 제15조 규정에 의거 강천산 군립공원 계획을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26년 04월 10일

1. 공원의 명칭 및 종류 : 강천산 군립공원(변경없음)
2. 공원구역의 면적 : 15,812㎢ (변경없음)
3. 공원구역안의 주요 보호대상자원(변경없음)

○ 경관 자원 현황

구 분	자 원 내 용
산 봉	○ 광덕산(선녀봉), 천지봉, 강천산(왕자봉), 옥호봉, 형계봉, 신선봉, 장군봉, 시루봉
계곡 및 골	○ 윗용소, 아랫용소, 우작골, 물통골, 지적골, 원등골, 소목골, 원등골, 선녀계곡(저분계골), 삼인대계곡(황우계골), 금강계곡(탑상골)
기암괴석	○ 병풍바위, 부처바위(관음암), 송낙바위, 범바위, 금강문, 장군바위, 북바위, 거라시바위, 아비바위, 어미바위, 남근석
폭 포	○ 비룡폭포, 병풍폭포, 구장군폭포, 약수폭포, 용머리폭포, 천우폭포
주요수림	○ 소나무군락(해발 400m), 활엽수림(해발 200m) - 굴참나무, 갈참나무, 떡갈나무, 신갈나무, 참나무류

○ 인문 자원 현황

종 류	명 칭	소 재 지	비 고
지정 문화재	삼인대	팔덕면 청계리 산 271	전라북도 유형문화재 제27호
	강천사 5층석탑	팔덕면 청계리 996	전라북도 유형문화재 제92호
	강천사 모과나무	팔덕면 청계리 996	전라북도 기념물 제97호
전통사찰	강천사	팔덕면 청계리	-

#### 4. 용도지구계획(변경없음)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계		15.812	100.0	
공원자연보존지구		6.845	43.2	
공원자연환경지구		8.707	55.2	
공원 마을지구	소 계	0.260	1.6	
	구. 공원자연취락지구	0.046	0.3	
	구. 집단시설지구	0.214	1.3	

5. 공원마을지구(구. 공원집단시설지구) 계획(변경없음)

구분	면적(㎡)	구성비(%)	비고
총계	214,126	100.0	
공공시설지	3,679	1.7	
상업시설지	5,328	2.5	
숙박시설지	1,851	0.9	
녹지	96,565	45.1	
기타시설지	106,703	49.8	
도로 및 광장	18,502	8.6	
주차장	43,931	20.5	
구거	24,180	11.3	
체육시설	1,279	0.6	
자연체험공원	16,645	7.8	
제각	1,254	0.6	
단성전	912	0.4	

6. 공원시설에 대한 종류별 수량 및 규모

가. 공공시설(변경없음)

○ 매표소

구분	번호	시설명	위치	부지면적(㎡)	개소수	비고
합계	-	-	1개소	200	1	
매표소	1	간이매표소	팔덕저수지 주변	200	1	

나. 보호 및 안전시설(변경없음)

○ 조경시설

구분	번호	시설명	위치	부지면적(㎡)	개소수	비고
합계	-	-	5개소	7,050	5	
조경시설	1	구장군인공폭포	야외전시장 일원	3,150	1	
	2	병풍인공폭포	강천산 매표소 일원	3,750	1	
	3	휴게정자1	어린이 놀이터 인근	50	1	
	4	휴게정자2	현수교 인근	50	1	
	5	휴게정자3	야외전시장 인근	50	1	

다. 휴양 및 편의시설

○ 공중화장실(금회변경)

구분	번호	시설명	위치	부지면적(㎡)			개소수		
				기정	증감	변경	기정	증감	변경
합계	-	-	4개소	230	(감)70.33	159.67	4	-	-
공중 화장실	1	공중화장실(병풍바위 앞)	팔덕 청계 산269	120	(감)70.33	49.67	1	-	-
	2	공중화장실(강천사 옆)	팔덕 청계 995	30	-	-	1	-	-
	3	공중화장실(현수교 아래)	팔덕 청계 산263-1	30	-	-	1	-	-
	4	공중화장실(야외전시장)	팔덕 청계 산287-1	50	-	-	1	-	-

○ 숲속 데크시설(금회변경)

번호	노선명		구 간	폭 (m)	연장		비고
					(km)	증감	
1	병풍폭포~ 옥호봉	기정	-				
		변경	팔덕면 청계리 산269	1.5	0.15	0.15	

○ 전망대(변경없음)

구 분	번호	시설명	위치	부지면적(㎡)	개소수	비고
합 계	-	-	4개소	1,500	4	
전망대	1	전망대1	팔덕 청계 산289	300	1	
	2	하늘전망대	팔덕 청계 산111 일대	400	1	
	3	바위전망대	팔덕 청계 산139 일대	400	1	
	4	광덕산전망대	팔덕 청계 산105 일대	400	1	

○ 어린이 놀이터(변경없음)

구 분	번호	시설명	위치	부지면적(㎡)	개소수	비고
합 계	-	-	1개소	180	1	
어린이놀이터	1	어린이놀이터	팔덕면 청계리 267	180	1	

○ 세족장(변경없음)

구 분	번호	시설명	위치	부지면적(㎡)	개소수	비고
합 계	-	-	1개소	64	1	
세족장	1	세족장	병풍폭포 인근	64	1	

라. 문화시설(변경없음)

구분	번호	시설명	위치	부지면적(㎡)	개소수	비고
합 계	-	-		164,204.8	5	
식물원	1	식물원	팔덕 청계 산269	90,000	1	
전시관	1	삼인대전시장	팔덕 청계 산271	3,305.8	1	
야외전시장	1	야외조각원	구장군폭포 일원	11,985	1	
기념관	1	삼인정신기념관	강천사 앞	132	1	
자연학습장	1	생태학습 및 치유정원	구림 자양 산152-1일원	58,782	1	

마. 교통·운송시설(변경없음)

○ 진입도로

구분	규모		기능	연장(km)	기점	종점	비고
	번호	폭원(m)					
합계	-	-	3개 노선	3.2	-	-	
진출입로	1	6	진출입로	0.3	공원마을지구내 진입도로	강천호 자연마을지구	
	2	5	진출입로	1.5	공원구역	원자실소류지	
	3	6	진출도로	1.4	서흥리 706-7	청계리 907-1	

○ 등산로

구분	규모		기능	연장(km)	기점	종점	비고
	번호	폭원(m)					
합계	-	-	12개 코스	34.1	-	-	
등산로	1	-	등산로	2.7	병풍바위	구장군폭포	
	2	-	등산로	1.0	현수교 부근	삼인대 앞	
	3	-	등산로	1.5	구장군폭포	등산로4	
	4	-	등산로	12.2	병풍폭포	옥호봉	
	5	-	등산로	1.5	등산로4	구장군폭포	
	6	-	등산로	0.8	제2강천호수	등산로4	
	7	-	등산로	0.9	황우계골	구.이목사격장 부근	
	8	5	등산로	8.6	구장군폭포	공원마을지구 진입도로	
	9	-	등산로	1.7	병풍폭포 앞	황우계골(등산로7 시점)	
	10	-	등산로	1.3	옥호봉 부근	병풍폭포	
	11	-	등산로	1.3	현수교 부근	왕자봉 부근	
	12	-	등산로	0.6	청계리 1038-1 부근	청계리 1042-5 부근	

○ 교량

구분	번호	시설명	위치	규모(m)		비고
				폭원	연장	
합계	-	10개소	-	-	216.6	
교량	1	현수교	팔덕면 청계리 지내(263-1)	1	75	
	2	금강교	팔덕면 청계리 1042 일대	3.5	15	
	3	송음교	팔덕면 청계리 324	3.6	8.6	
	4	극락교	팔덕면 청계리 324	5	10	
	5	십장생교	팔덕면 청계리 산289임 일대	5	17	
	6	소교량	팔덕면 청계리 산289임 일대	4.5	19	
	7	목교1	팔덕면 청계리 263-1 (현수교 하단)	1.5	10	
	8	목교2	팔덕면 청계리 263-1 (현수교 하단)	2	20	
	9	목교3	팔덕면 청계리 263-1	1.5	12	
	10	목교4	팔덕면 청계리 263-1 (산수정 인근)	2	30	

바. 부대시설(변경없음)

○ 급수시설

구분	번호	시설명	위치	부지면적(㎡)	개소수	비고
합 계	-	-	1개소	1,367	1	
급수시설	1	물탱크	팔덕면 청계리 961-2	1,367	1	

7. 공원계획의 결정 및 변경 연월일 : 2026년 04월

8. 공원계획 결정(변경)도 및 편입토지조서 : 게재생략(열람자료 참조)

9. 관계도서 : 순창군 산림공원과 (공원관리팀)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063-650-5542)

# 입 법 예 고 문

순창군 공고 제2026-353호

「순창군 민원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순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4월 15일

## 순 창 군 수

### 순창군 민원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1. 개정 이유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2026.10.29.시행)에 따라 민원 상담(전화면담)의 권장 시간을 설정·운영하고자 함

#### 2. 주요 내용

- 민원 상담(전화면담) 권장시간 설정 및 운영 근거 마련(안 제8조제1항제7호)
  - 상담 권장시간을 1회당 20분으로 설정
- 단계별 대응
  - (15분 경과 시) 상담 종료 사전 안내 및 예고
  - (20분 경과 시) 민원상담 종료

### 3. 의견제출

가. 「순창군 민원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5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순창군수(참조 : 민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의견과 그 이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하는 곳 : (우)56039 순창군 순창읍 경천로 33, 순창군청 민원과

(☎ 063-650-1421, Fax 063-650-1429 또는 순창군청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sunchang.go.kr>)

라. 의견제출방법 :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함

###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순창군청 민원과 민원팀(☎063-650-1421)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순창군 민원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순창군 민원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순창군 민원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1항 중 “제7호” 를 “제8호” 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 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민원 상담(전화 또는 면담) 1회당 권장시간을 20분으로 설정하고 15분 경과 시 종료 예고, 20분 경과 시 상담 종결 가능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8조(안전한 근무환경 마련 및 근무여건 개선 등)</p> <p>① 군수는 민원 처리 담당자가 안전한 근무환경에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안전시설·장비 등의 확충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p> <p>1.~6.(생략)</p> <p><u>&lt;신설&gt;</u></p> <p>7. (생략)</p>	<p>제8조(안전한 근무환경 마련 및 근무여건 개선 등)</p> <p>① ----- ----- ----- -----</p> <p>1.~6.(현행과 같음)</p> <p>7. <u>민원 상담(전화 또는 면담) 1회당 권장 시간을 20분으로 설정하고 15분 경과 시 종료 예고, 20분 경과 시 상담 종결 가능</u></p> <p>8. (현행 제7호와 같음)</p>

# 입 법 예 고 문

순창군 공고 제2026 - 377호

순창군 권일송 문학상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순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4월 15일

순 창 군 수

## 순창군 권일송 문학상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 1. 제정 이유

순창군 출신 고 권일송 시인의 작품세계와 높은 작가정신을 기리고 순창군의 문학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역량 있는 작가에게 수여하는 「순창군 권일송 문학상」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2. 주요 내용

가. 주최 및 주관(안 제2조)

나. 공모, 공모 부문 및 자격, 수상자의 요건(안 제3조 내지 제5조)

다.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성, 직무, 회의(안 제6조 내지 제10조)

라. 심사위원회 구성(안 제11조)

마. 수상자의 결정, 이중시상 금지, 시상금 및 지원사업 등(안 제12조 내지 제15조)

바. 저작권(안 제16조)

### 3. 의견 제출

가. 순창군 권일송 문학상 운영 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5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순창군수 [참조 : 문화관광과]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 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의견과 그 이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하는 곳 : (우)56039 순창읍 경천로33 순창군청 문화관광과

(☎ 063-650-1624, Fax 650-1629

또는 순창군청 인터넷홈페이지 <http://www.sunchang.go.kr>)

라. 의견제출방법 :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무방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순창군청 문화관광과 문화예술팀 담당자 (☎063-650-1624)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순창군 권일송 문학상 운영 조례안

## 순창군 권일송 문학상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순창출신 권일송 작가의 작품세계와 작가정신을 기리고 대한민국 문학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역량 있는 작가에게 수여하는 순창군 권일송 문학상(이하 ‘문학상’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최 및 주관) 문학상은 순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주최하고, 순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선정하는 문화예술 단체가 주관하게 할 수 있다.

제3조(공모) 군수는 매년 문학상 수상작을 선정하기 위하여 문학작품을 공개 모집한다.

제4조(공모 부문 및 자격) ① 공개 모집하는 공모 부문은 시 또는 수필로 한다.  
② 누구나 제1항에 따른 공개 모집에 응모할 수 있다. 단, 응모작은 미발표 창작품이어야 한다.

제5조(수상자의 요건) 문학상의 수상대상자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권일송 문학정신을 함양하고, 역량 있는 작가로서 활발하게 창작활동을 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6조(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문학상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순창군 권일송 문학상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문학상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2. 심사위원 선정 및 수상자 결정에 관한 사항
  3. 수상자의 강연회 개최 등 부대행사에 관한 사항
  4. 그밖에 군수 또는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③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7조(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행정복지국장, 문화관광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순창군의회 추천 인원 1명, 문학 분야의 전문 지식과 덕망을 갖춘 사람 중에서 한쪽의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회의 위원은 심의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한다.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할 수 있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며, 운영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①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군수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심사위원회의 구성) ① 문학상 심사를 위해 운영위원회에 순창군 권일송 문학상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사위원의 수는 5명 이상 10명 이하로 하며, 심사위원장은 심사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심사위원 임기는 해당연도 심사에 한한다.

④ 심사위원장은 심사 결과와 심사평을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심사위원 명단은 수상자 발표와 함께 공개한다.

제12조(수상자의 결정) ① 수상자는 운영위원회에서 선정한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② 수상자의 선정 경위 및 결과는 공개한다.

제13조(이중 시상 금지) 이 조례에 따라 문학상을 수상한 사람에 대해서는 거듭 시상하지 않는다.

제14조(시상금 및 지원사업) ① 문학상은 매년 시상하고, 시상금 및 운영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정한다. 단, 심사 결과 수상 대상자가 없는 경우에는 시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고 권일송 작가의 대외적인 선양을 위하여 생가 복원 사업 등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 있는 경우 추진할 수 있다.

제15조(기록보존 및 단행본 발간) ① 군수는 문학상 수상자의 인적사항·공적사항 및 수상내역 등을 기록한 대장을 보존하여야 한다.

② 문학상 시상 의의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단행본을 발간할 수 있다.

제16조(저작권) 문학상 수상 작품에 대한 저작권과 2차적 저작권(수상자의 번역·각색·영상물 등 포함)은 수상일로부터 순창군에 귀속되며, 귀속 기간은 군수가 정한다.

제17조(실비 보상)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운영위원회 위원 및 심사위원에게 「순창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 입 법 예 고 문

순창군 공고 제2026-381호

순창군 사무전결 처리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순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4월 15일

## 순 창 군 수

### 순창군 사무전결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1. 개정 이유

순창군 인사발령(2026.1.7.)에 따른 팀신설 등 행정사무의 권한과 업무이관 및 합리적인 결정권한을 반영하여 전결사무를 정비하고자 함

#### 2. 주요 내용

가. 팀신설·폐지에 따른 담당업무 이관 사항의 사무에 대한 전결사항을 전결 처리 규칙에 반영(별표)

- 건강장수과 : 통합돌봄T/F (신설)
- 장류산업사업소 : 음식문화정책T/F (폐지)

나. 부서별 전결규정 변경사항 사무전결 처리 규칙에 반영(별표)

---

### 3. 의견 제출

가. 순창군 사무전결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5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순창군수(참조 : 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순창군 사무전결 처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별표(부서별 전결규정 변경사항) 자료는 군청 홈페이지(고시공고)에서 확인 가능

나. 의견제출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의견과 그 이유)
-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하는 곳 : (우)56039 순창군 순창읍 경천로 33, 순창군청 행정과  
(☎ 063-650-1231, Fax 063-650-1229 또는 순창군청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sunchang.go.kr>)

라. 의견제출방법 :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무방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순창군청 행정과 총무팀 주무관(☎063-650-1231)에게 문의바랍니다.

붙임 : 순창군 사무전결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 순창군 사무전결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순창군 사무전결 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군계획시설사업 공사완료 공고

순창군 고시 제2023-177호(2023. 12. 15.)로 결정(변경)된 군계획시설(공공공지)사업이 완료되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사완료 공고합니다.

2026년 4월 15일

순창군수

### 1. 군계획시설 사업 내용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순창군 순창읍 남계리 685-4번지 일원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1) 종 류 : 군계획시설(공공공지)

2) 명 칭 : 순창읍 중앙로 일원 도시재생사업(청순문화마당)

다. 사업의 면적(규모): 1,271.9㎡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1) 성 명 : 순창군수(농촌활력과), 순창군 순창읍 경천로 33

2) 주 소 : 순창군 순창읍 경천로 33

마. 사업의 착수 및 준공일

1) 실시계획인가일 ~ 2026. 4. 1.

바. 준공도서 등 관련서류 : 게재 생략

※ 기타 관계도서(게재생략)는 순창군청 건설과(063-650-1827)에 및 농촌활력과(063-650-176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입 법 예 고 문

순창군 공고 제2026-385호

「순창군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순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4월 15일

## 순 창 군 수

### 순창군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1. 개정이유

조례의 상위법령인 「국가정보화기본법」이 「지능정보화 기본법」으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관련 용어 및 내용을 상위 법령에 부합하도록 개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조례 제정 목적 및 용어의 정의(제1조~제2조)
- 나. 지능정보화시책의 기본원칙(제3조)
- 다.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의 수립(제4조)
- 라. 지능정보화책임관(제5조)
- 마. 분야별 지능정보화 추진 및 민간협력(제6조~제7조)
- 바. 지능정보화 교육 및 정보문화(제8조~제9조)
- 사. 정보격차해소 및 정보보호(제10조~제11조)

---

### 3. 의견제출

가. 순창군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5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순창군수(참조 : 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의견과 그 이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하는 곳 : (우)56039 순창군 순창읍 경천로 33, 순창군청 행정과

(☎ 063-650-1243, Fax 063-650-1229 또는 순창군청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sunchang.go.kr>)

라. 의견제출방법 :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무방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순창군청 행정과 주무관(☎063-650-1243)에게 문의바랍니다.

붙임 순창군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 순창군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순창군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순창군 지능정보화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순창군의 지능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관련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지능정보화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지능정보화시책의 기본원칙) 순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능정보화 시책을 추진할 때 다음 각 호의 원칙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지역사회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
2. 행정능률의 향상 및 대민서비스 개선
3. 군민의견 수렴·공감대 확산 등 군민과의 교류 확대
4. 정보격차 해소와 군민의 삶의 질 향상
5. 지능정보화 역기능의 효과적 예방 및 대처

제4조(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 수립·시행) 군수는 법 제7조에 따라 매년 순창군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지능정보화책임관)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정보화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② 지능정보화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려는 부서의 장은 지능정보화책임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

③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제6조(분야별 지능정보화 추진) ① 군수는 군민의 삶의 질 향상, 역량 강화와 정보격차 해소 등을 위하여 행정·생활·산업 등의 분야를 대상으로 하는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때 행정정보 및 정보자원의 공동 활용이 가능하도록 호환성을 확보하고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업무를 표준화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지능정보화 사업 및 정보시스템 등의 운영을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지능정보화의 특수성·기술성 등 고도의 업무는 외부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제7조(민간기관 등과의 협력) ① 군수는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때 민간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관련 민간사업자와 민간기관·단체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지능정보화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지능정보화와 관련된 기관·단체 및 외국의 기관·단체·정부 등과 대외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

제8조(지능정보화 교육) ① 군수는 군민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지능정보의 활용 및 지능정보화 추진 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지능정보화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능정보화 교육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교육시설이나 장비의 확보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③ 군수는 필요한 경우 외부기관에 지능정보화 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

제9조(건전한 정보문화의 확산) ① 군수는 지능정보화의 확산에 따라 발생하는 지능정보화 역기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건전한 정보문화를 창조하고 확산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② 군수는 군민과 공무원의 지능정보서비스에 대한 과도한 의존을 예방하고 해소하기 위하여 상담·교육·홍보 등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제10조(정보격차의 해소) 군수는 정보취약계층 및 그 밖에 군수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에 대하여 정보통신제품 및 정보통신서비스를 유상 또는 무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정보보호) ① 군수는 정보보호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전산실 출입 권한 등 정보자원에 대한 물리적 보안
2. 행정정보 및 개인정보의 수집, 처리, 활용, 폐기 등 전 단계에 걸친 관리
3. 정보유출 방지를 위한 대책 수립
4. 그 밖에 정보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개인정보 보호 방침 및 기준을 정하여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 제4조에 따라 수립된 정보화 시행계획은 이 조례에 따라 수립된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추진 중인 사업은 이 조례에 따라 추진된 것으로 본다.

---

# 입 법 예 고 문

순창군 공고 제2026 - 391호

순창군 청년근로자 기숙사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을 제정 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순창군 자치법규 입법 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4월 15일

## 순 창 군 수

### 순창군 기업연계 청년근로자 기숙사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 1. 제정 이유

「순창군 청년근로자 기숙사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입사자격, 입사신청 및 입사자 선정절차, 입사자 생활수칙에 관한 사항을 시행규칙으로 제정하여 체계적인 입사관리와 편안한 거주공간 제공을 위한 효율적인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 2. 주요 내용

가. (입사자격) ①18세 이상 ~ 49세 이하 청년근로자, ②순창군 소재 공장등록을 완료한 제조업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③입사일 전까지 순창군 내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완료한 내국인 청년, ④입사자로 선정된 자가 입사를 포기하거나 중도 퇴사(자진퇴사, 강제퇴사 포함)한 자는 입사포기 및 퇴사일로부터 2년 동안 입사자격 제한 (안 제2조)

- 
- 나. (입사자 모집) 정기 공개모집을 연 1회 실시하고 수시로 발생하는 공실에 대해서는 예비후보자 순위에 따라 입사자로 선정 (안 제3조)
  - 다. (신청절차) 기업에 입사원서를 제출하고 기업은 취합하여 추천하고자 하는 지원자에 대하여 추천서를 군수에게 제출 (안 제4조)
  - 라. (선정기준) 입사경력이 짧고, 월평균 급여가 낮은 자를 우선으로 한 평가포 합계점수가 높은 자 순서에 따라 선정 (안 제5조)
  - 마. (입사기간) 1년을 기본으로 하되 주민등록 유지의무 정상 유지 시 1년 연장 가능. 또한, 2년 후 재 선정시 계약이 갱신되며 총 4년까지만 거주가능 (안 제6조)

### 3. 의견 제출

가. 순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 관한 제정 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5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순창군수 [참조 : 경제교통과장]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 제출 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의견과 그 이유)
-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하는 곳 : (우)56039 순창읍 경천로33 순창군청 경제교통과

(☎ 063-650-1312, Fax 650-1329 또는 순창군청 인터넷홈페이지 <http://www.sunchang.go.kr>)

라. 의견제출방법 :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무방

###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순창군청 경제교통과 지역경제 팀장 김극환(☎063-650-1312)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순창군 기업연계 청년근로자 기숙사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안) 1부.

---

# 순창군 기업연계 청년근로자 기숙사 설치 및 운영 조례

## 시행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순창군 기업연계 청년근로자 기숙사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사자격) ① 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순창군 청년 기본 조례」 제2조에 따라 순창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18세 이상 49세 이하의 청년(단, 입사자로 선정되어 입사등록 이전까지 주소를 이전하는 경우 주소조건은 충족된 것으로 간주)
2. 입사 신청일 현재 공장등록을 완료한 순창군 소재 제조업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청년 근로자
3. 입사등록 전까지 순창군 내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완료한 내국인 청년

② 입사자로 선정된 자가 입사를 포기하거나 입사 후 중도 퇴사(자진퇴사 및 강제퇴사 포함)한 자는 입사포기 또는 퇴사 후 2년 동안 입사자격이 없는 것으로 한다.

제3조(입사자 모집) 기숙사 입사자 모집은 정기 공개모집을 연 1회 실시하고 수시로 발생하는 공실에 대해서는 예비 후보자 순위에 따라 입사자로 선정한다. 다만, 예비후보자 순위는 다음 공개모집 이전까지만 유효하다.

제4조(입사신청 절차) 지원자가 조례 제5조에 따라 입사원서를 기업에 제출하면, 기업은 입사원서를 취합하여 추천하고자 하는 지원자에 대하여 추천서를 작성 입사원서와 함께 군수에게 제출한다.

---

제5조(입사자 선정기준) 조례 제5조에 따른 입사자 선정기준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며, 입사자 선정 평가표(별표1)에 따라 합계점수가 높은 신청자 순서로 입사자를 선정한다. 선정되지 못한 신청자는 순위에 따라 결원 발생 시 추가 선정할 수 있다.

1. (입사경력 기준) 입사경력이 짧은 청년 근로자를 점수표에 따라 높은 점수로 평가한다.
2. (급여기준) 월평균 급여가 적은 청년 근로자를 점수표에 따라 높은 점수로 평가한다. (월평균 급여는 최근 3개월간의 평균 급여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3. (보조 기준) 위 입사자 선정 평가표에 따른 합계점수가 같은 경우 월평균 급여가 적은 사람을 우선 선정할 수 있다. 다만, 선정가부의 월평균 급여 차이가 1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생활 여건(출퇴근 거리, 주거 상황 등)을 고려하여 최종 순위로 정할 수 있다.

제6조(입사기간) ① 기숙사 입사기간은 1년을 기본으로 하고 1년 동안 제8조 주민등록 유지의무(연 11개월 이상 순창군 내 주민등록 유지)를 정상 유지한 경우 입사기간 1년이 당연히 연장된다.

② 연장기간을 포함하여 2년이 종료한 후 주민등록 유지의무를 준수한 자가 제2조 정기모집에 따라 입사신청하고 입사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③ 연속하여 총 4년 입사기간이 종료한 후에는 퇴사하여야 한다. 다만, 입사 신청자가 모집인원에 미달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7조(생활수칙) ① 조례 제7조에 따라 입사자는 생활수칙(별표2)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생활수칙(서약서)에 따라 입사자가 구두경고 2회 후 퇴사명령을 받은 경우 3일 이내에 퇴사하여야 한다. 만약, 이에 불응할 경우 강제퇴거 조치 후 그

---

비용을 입사보증금에서 차감한다.

제8조(입사자의 의무) ① 입사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기숙사 및 부대시설을 유지·관리하고 입사계약(임대차계약)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입사자는 입사와 동시에 「주민등록법」에 따라 전입신고를 하고 주민등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순창군 관내에 주민등록을 완료 및 유지하고 있는 자는 예외로 한다.

③ 입사자는 순창군 관내에 주민등록을 연 11개월 이상 유지하여야 한다. 만약 연 1개월 이상 관외 지역으로 주민등록이 전출된 경우 비거주자로 간주하여 강제 퇴사조치 할 수 있다.

####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 입사자 선정 평가표

구 분	기 준	배점	점수
근무기간 (50점)	6개월 미만	50점	
	6개월 이상 ~ 1년 미만	40점	
	1년 이상 ~ 2년 미만	30점	
	3년 이상 ~ 4년 미만	20점	
	4년 이상 ~ 5년 미만	10점	
	5년 이상	0점	
월 평균급여 (50점)	220만원 미만	50점	
	220만원 이상 ~ 250만원 미만	40점	
	250만원 이상 ~ 300만원 미만	30점	
	300만원 이상 ~ 350만원 미만	20점	
	350만원 이상 ~ 400만원 미만	10점	
	400만원 이상	0점	
합계점수			

※ 예비후보자 관리 : 선정되지 못한 신청자는 순위에 따라 예비후보자로 관리하고  
결원 발생시 추가 선정한다.

※ 제출서류 : 주민등록증명서,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기타 증명이 필요한 서류)

## 기숙사 생활수칙 (서약서)

1. 타인의 금품을 절취하거나 기타 미풍약속을 해치는 행위 금지
2. 지나친 음주, 도박, 소란, 고성방가, 폭력 행위 금지
3. 외부인의 무단방문, 숙식 행위 금지
4. 지정된 장소 이외 무단취사 행위 금지
5. 층간소음을 유발하여 타인에게 피해를 끼치는 행위 금지
6. 기숙사 내 비치되어 있는 비품 파손, 이동, 변형하는 행위 금지
7. 기숙사 내에서 흡연하는 행위 금지
8. 타인의 우편물, 택배 수취 및 개봉 행위 금지
9. 애완동물을 키우는 행위 금지
10. 개인의 위생관리를 소홀히 하여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행위 금지
11. 그밖에 기숙사 생활규칙이 필요하다고 사전에 협의한 사항 금지

위 사항을 위반한 입주자는 구두경고 2회 후 퇴사명령을 할 수 있으며, 쾌적한 기숙사 환경을 위해 숙소 청결과 부채시 에너지절약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입사자 의무사항** : 1. 입사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기숙사 및 부대시설을 유지·관리하고 입사계약(임대차계약)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입사자는 입사와 동시에 「주민등록법」에 따라 전입 신고를 하고 주민등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3. 입사자는 순창군 관내에 주민등록을 연 11개월 이상 유지하여야 한다. 만약 연 1개월 이상 관외 지역으로 주민등록이 전출된 경우 비거주자로 간주 강제 퇴사조치 할 수 있다.

상기 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인지하였으며, 앞으로 기숙사 입사기간 동안 규칙준수를 약속하고 규칙을 위반할 경우 어떠한 처분도 받아들이겠습니다.

○ 서약자 : (인/서명)

---

# 입 법 예 고 문

순창군 공고 제2026 -392호

순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를 일부개정 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순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4월 15일

순 창 군 수

## 순창군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1. 개정 이유

「순창군 청년근로자 기숙사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설치되는 제조업 청년근로자 기숙사의 재정적 운영을 위해 「순창군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제3장 투자진흥기금의 운용 관리 내용에 기숙사 운영을 위한 수입과 지출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2. 주요 내용

가. (기금의 설치 및 재원) 투자진흥기금의 설치 목적 및 재원 근거에 청년근로자 기숙사 등 기업지원 시설의 운영을 위해 기금이 사용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안 제10조)

- 
- 재원 구성에 “청년근로자 기숙사 입사보증금 및 기숙사비, 관리비, 기타 기업지원 시설의 수익금 등” 내용 추가

나. (기금의 용도) “청년근로자 기숙사 입사보증금 지급 및 운영·관리비, 기타 기업지원 시설 운영비 등” 지출근거 명시 (안 제11조)

### 3. 의견 제출

가. 순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 관한 제정 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5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순창군수 [참조 : 경제교통과장]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 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의견과 그 이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하는 곳 : (우)56039 순창읍 경천로33 순창군청 경제교통과

(☎ 063-650-1312, Fax 650-1329 또는 순창군청 인터넷홈페이지 <http://www.sunchang.go.kr>)

라. 의견제출방법 :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무방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순창군청 경제교통과 지역경제 팀장 김극환(☎063-650-1312)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순창군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일부 개정 조례안 1 부.

---

## 순창군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순창군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1항 중 “「지방자치법」 제142조의 규정”을 “「지방자치법」 제159조의 규정”으로 개정하고, “국내·외 투자기업의 지원을 위한 재원확보를 위하여”를 “국내·외 투자기업의 지원을 위한 재원확보 및 청년 근로자 기숙사 등 기업지원시설 운영관리를 위하여”로 개정한다.

제10조 제2항 재원 조성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청년 근로자 기숙사 입사보증금 및 기숙사비, 관리비, 기타 기업지원 시설의 수익금 등

제11조 기금의 용도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청년 근로자 기숙사 입사보증금 반환 및 기숙사 운영비, 기타 기업지원 시설의 운영비 등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0조(기금의 설치 및 재원) ① 군수는 「지방자치법」 제14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외 투자기업의 지원을 위한 재원확보를 위하여 순창군투자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p> <p>② (생략) ③ (생략)</p>	<p>제10조(기금의 설치 및 재원) ① 군수는 「지방자치법」 제15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외 투자기업의 지원을 위한 재원확보 및 청년 근로자 기숙사 등 기업지원시설 운영관리를 위하여 순창군투자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p> <p>②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p>
<p>④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군 출연금</li> <li>2. 기금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li> <li>3. 기타 출연금·보조금 및 차입금 등</li> <li>4. &lt;신설&gt;</li> </ol>	<p>④ (현행과 같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현행과 같음)</li> <li>2. (현행과 같음)</li> <li>3. (현행과 같음)</li> <li>4. <u>청년 근로자 기숙사 입사보증금 및 기숙사비, 관리비, 기타 기업지원 시설의 수익금 등</u></li> </ol>
<p>제11조(기금의 용도) (생략)</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생략)</li> <li>2. (생략)</li> <li>3. (생략)</li> <li>4. (생략)</li> <li>5. &lt;신설&gt;</li> </ol>	<p>제11조(기금의 용도) (현행과 같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현행과 같음)</li> <li>2. (현행과 같음)</li> <li>3. (현행과 같음)</li> <li>4. (현행과 같음)</li> <li>5. <u>청년 근로자 기숙사 입사보증금 반환 및 기숙사 운영비, 기타 기업지원 시설의 운영비 등</u></li> </ol>

## 온천원 보호지구 해제를 위한 의견청취 공고

1993. 09. 28. 온천원 보호지구로 지정된 **상송온천(북흥면 상송리)**이 현재까지 장기 미개발 방치로 인하여 지역발전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개인 토지 소유자의 토지이용제한 등 재산권 침해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해당 사업의 추진상황으로 보아 온천원 보호지구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온천원 보호지구를 해제하기 위해 「행정절차법」 제22조(의견청취)에 따라 의견을 수렴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자는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4월 10일

순 창 군 수

### 1. 온천지구 개요

- 가. 온 천 명 : 상송 온천(북흥면 상송리)
- 나. 위 치 : 순창군 북흥면 상송리 산60-1번지 일대
- 다. 지정면적 : 1,089,431㎡(139필지, 굴착공수 4곳)
- 라. 온천발견 신고 및 수리 : 1992. 04. 26.
- 마. 온천원보호지구 지정 : 1993. 09. 28.

### 2. 의견제출 방법

- 가. 제출기간 : 2026. 04. 10. ~ 2026. 04. 26.
- 나. 제출방법 : 의견서(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를 작성하여 방문 또는 우편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제출장소 : 순창군 순창읍 경천로 33 순창군청 산림공원과 (☎ 063-650-5542)

---

### 3. 기타사항

가. 기간 내에 제출된 의견이 없는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의견청취 공고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각각 통지하며, 주소 거소불명 등으로 통지를 받지 못하는 분에 대하여는 본 공고로 통지에 갈음합니다.